

청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및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, 유아교육법에 의거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설치) 이 위원회는 청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청성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 2 장 위원의 구성

제3조 (위원 정수 및 구성)

- ①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명, 교원위원 3명, 지역위원 1명 등 총 8명으로 한다.
- ② 학부모위원 중 1명은 유치원학부모로, 교원위원 중 1명은 유치원교원으로 한다.
- ③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제4조 (위원의 자격)

-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책임자가 아니어야 한다.
-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- ④ 위원은 다른 학교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-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선출관리위원회)

-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.
-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표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.
-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-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인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7조(위원의 선출)

-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. 단,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 (단, 직접선거를 할 수 없는 경우 간접선거를 할 수 있다.)

-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 단,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
- ③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,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.
- ④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.
-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-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
제8조 (위원의 선출 시기)

-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-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9조(보궐선거)

-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조직)

-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-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·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 (위원의 자격 상실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-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-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·휴학·전학 및 퇴학한 때
-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-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-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
제12조 (위원의 의무)

-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- ④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기능 및 심의

제13조 (기능)

-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.
-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
제14조 (심의사항 등) 운영위원회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-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⑨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⑩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⑪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- ⑫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, 특정 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⑬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⑮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사항
- ⑯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 1.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 2.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자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의 운영 등

제15조 (회의소집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- ① 정기회는 4, 6, 9, 12월로 한다.
-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)
-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6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,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)

제17조 (서류 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8조 (의사 정족수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9조 (회의 공개)

- 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20조 (회의록 작성)

-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 (소위원회 설치)

-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~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·재정관리·시설관리의 3개 소위원회로 한다.

제22조 (운영 경비)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
제23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
제24조 (간사)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25조(회의운영 규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

제26조 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
-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『학교발전기금』을 조성할 수 있고,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27조 (운영세칙)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 6 장 규정의 개정

제28조(개정의 제안)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1 이상,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제29조(규정의 개정)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,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